

2022년(2021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조합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제49조의2, 제96조의2)에 근거하여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의무사항)
 -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 로그인>마이페이지>경영공시 입력
 - (제출기한) **회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회계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4월까지 입력
- 경영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 사유에 따라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영공시 대상

-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공시 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총회 개최	경영공시 제출		공시자료 검토	경영공시 수정	관리감독
결산, 사업계획 승인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입력·제출 (coop.go.kr)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시자료 공개	공시자료 검토 및 수정의견 전달	수정의견에 따라 보완 (필요시)	미공시, 부실공시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시)
협동조합	협동조합		회계법인 (경영공시 지원기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동조합	부처·자치단체
회계 종료일로부터 2~3개월 이내	회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2022년 경영공시는 이전과 달리 ‘승인’과정이 생략되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됨(개인정보 유출 주의)

경영공시 항목

구분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업종·업태, 소재지, 임원 및 조합원 현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첨부)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화·이사회 의사록
재정및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자산, 부채, 자본, 출자금, 법정적립금, 매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손익 □ (첨부) 결산 증빙자료 ((예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총화·이사회 등 활동상황
사업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사업계획 및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실적 등 □ (첨부)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협동조합 운영 시 의무

구분	주요내용
총회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 규약 제정·변경·폐지, 임원 선출·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합병·분할·해산·휴업,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 환급, 우선출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운영의 공개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2.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 명부 4.회계장부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input type="checkbox"/>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영공시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사업결산보고서 3.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4.사업결과보고서
주사업 이행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적립금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의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문의처

- (경영공시 상담) 1800-2012(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 (회계 및 결산 관련 문의) 02-2135-7254, 7928
- (기타 문의) 031-694-7741~5

협동조합등의 결산과 법정적립금 안내

◇ 협동조합등의 결산 및 법정적립금, 주요 질의사항(FAQ) 안내드립니다.

1. 개요

'법정적립금'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기재)상 협동조합등이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로 잉여금이 있을 경우,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일부를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을 말합니다.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100분 30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기본법 제50조, 동법 제97조 등)

잉여금의 기준은 '당기순이익'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정적립금 벌칙조항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협동조합등의 임직원(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기본법 제117조)

2. 결산

'결산'이란 회계연도말에 협동조합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종 회계 관련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결산이 완료됩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일반적인 결산절차를 따르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에 따라 결산을 하면 됩니다.

< 협동조합등의 결산 흐름도 >

기중 거래발생 시	분개장(전표입력), 총계정원장
↓	
결산예비절차(결산준비)	결산 수정전 시산표, 결산전표 입력, 결산 수정후 시산표
↓	
결산 본 절차(장부마감)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마감
↓	
재무제표 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협동조합등은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등) 이후, 협동조합등의 감사가 협동조합등의 결산보고서와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을 첨부한 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등의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정적립금 적립방법(회계처리)

‘법정적립금의 취지’는 잉여금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협동조합등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 내의 개념상 이동이며, 실제 현금을 통장에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적립금의 적립방법(회계처리)’는 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예. 2020년 회계연도)에 적립한 법정적립금은 당기(예. 2021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됩니다. 앞서 말한 회계처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법정적립금이 누적됩니다. 협동조합등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 법정적립금 회계처리 방법 >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II.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부채 총계	
II.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장기선여석금		- 조합원출자금	
-		II.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건물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비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기구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 특허권		(미처리결손금)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이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산 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자본	
I. 자본금	
- 조합원출자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	
(당기순이익)	
당기 : 원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전기에 적립한
법정적립금 기입**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미처리결손금이 많은 경우,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결손금을 보전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4. 법정적립금 적립하는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적립가능 여부 >

법정적립금 적립가능	법정적립금 적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순이익 발생(제1기)• 당기순이익 > 전기이월결손금• 당기순손실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순손실 발생(제1기)• 당기순이익 < 전기이월결손금• 당기순손실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다만, 설립연도(제1기) 이후(제2기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동조합등의 판단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결산 및 법정적립금 주요 질의사항(FAQ)

Q1)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면 적립하지 않습니다. 재무건정성 측면에서 당기순손실을 상회하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것을 권합니다.

Q2) 지사를 설치·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은 어떻게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나요?

A2) 본사와 지사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통합재무제표) 법정적립하면 됩니다.

Q3) 법정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요?

A3)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타법정적립금으로, 기본법상 법정적립금이 아닙니다.

Q4) 협동조합등은 설립하였지만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자수익이 발생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A4) 이자수익으로 인한 잉여금인 경우에도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Q5) 회계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예치한 경우(또는 현금등)에도 법정적립금인가요?

A5) 법정적립금은 현금 등으로 실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계정 재분류입니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적립금 미적립에 해당합니다.

참 고

법정적립금 적립 예시(미처분이익잉여금 기준)

□ 방법

법정적립금 회계처리를 위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 합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을 합친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 결산을 시작(제1기)으로 매년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누적하게 됩니다.

예로, 설립연도 결산(제1기) 시,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잉여금은 4,000,000원이 됩니다.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400,000원(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1,200,000원(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즉,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400,000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3,600,000원은 차기에 이월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1,200,000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2,800,000원을 차기에 이월합니다.

< 제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 >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4,000,00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0		
5. 중간배당금	0		
6. 당기순이익	4,000,000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1. 법정적립금	0		
2. 임의적립금	0		
합 계		4,000,00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200,000	
1. 법정적립금	1,200,000		
2. 임의적립금	0		
3. 이익준비금			
4. 배당금	0		
가. 현금 배 당	0		
5.	0		
6.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800,000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연도 다음 연도 결산(제2기) 시, 당기순이익이 11,75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전기에 이월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2,800,000원에 당기순이익 11,750,000원을 합한 미처분이익잉여금 14,550,000원에 대해 4,365,000원(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4,365,000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10,185,000원을 차기에 이월합니다.

< 제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 >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2 (당기)		제 1 (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4,550,000		4,000,00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00,000		0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5. 중간배당금	0		0	
6. 당기순이익	11,750,000		4,000,000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0
1. 법정적립금	0		0	
2. 임의적립금	0		0	
합 계		14,550,000		4,000,00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4,365,000		1,200,000
1. 법정적립금	4,365,000		1,200,000	
2. 임의적립금	0		0	
3. 이익준비금				
4. 배당금	0		0	
가. 현금 배 당	0		0	
5.	0		0	
6.	0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0,185,000		2,800,000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우

설립연도 다음연도 결산(제2기) 시, 당기순이익이 11,75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전기에 이월한 미처분이익잉여금 3,600,000원에 당기순이익 11,750,000원을 합한 미처분이익잉여금 15,350,000원에 대해 1,535,000원(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합니다.

즉,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1,535,000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13,815,000원은 차기에 이월합니다.